

보도시점 2025. 4. 7.(월) 10:00 / 배포 2025. 4. 7.(월) 08:30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 4월 7일부터 31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4. 7.부터 5. 7.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System on Chip)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 1. 22.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로드컴은 ①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이하 ‘거래상대방’)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②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 (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위의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상생방안은 크게 ①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②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③반도체 분야의 중소기업 홍보 활동 지원(반도체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 기금으로 13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는 칩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설계 등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반도체와 전자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

공정위는 2025. 4. 7.부터 31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소식·뉴스 → 공지·공고)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동의의결제도 참고 자료

<붙임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웅 (044-200-4514)
		담당자	사무관	김건주 (044-200-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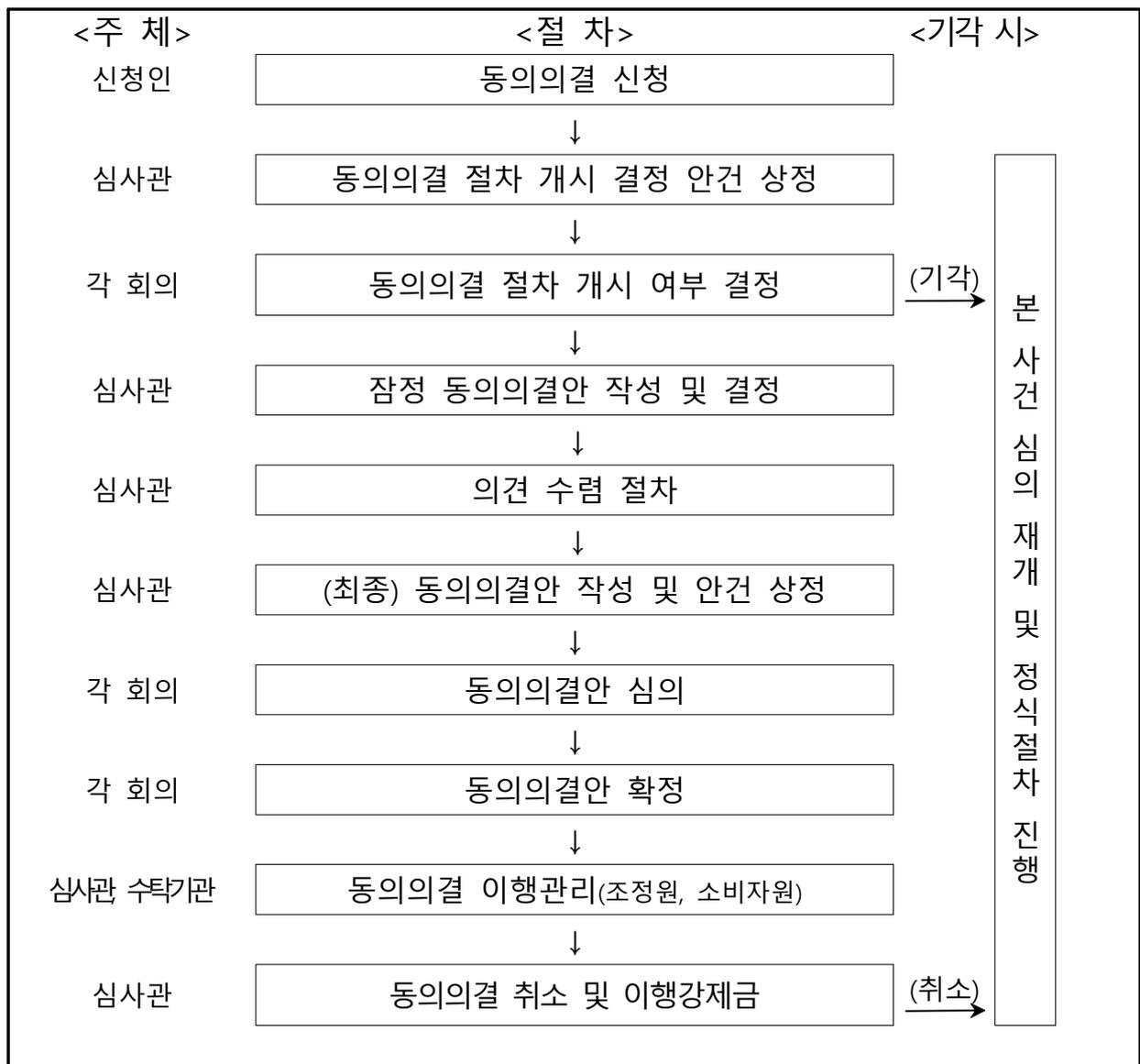
붙임 1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 동의의결 개요

-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 동의의결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